

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3. 1. 11 선고 2021가단539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윤희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순호

변 론 종 결 2022. 12. 21.

판 결 선 고 2023. 1. 11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, C과 피고 사이에 2019. 6. 14.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9. 6. 24. 접수 제1055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주식회사 D은 2016. 10. 24. C에게 400만 원을 대출하였다.

나.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통틀어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E(C의 모친)와 공유하고 있었는데(공유지분 각 1/2), C과 E는 2019. 6. 14.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(이하 ‘이 사건 매매계약’이라 한다) 2019. 6. 24.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(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10553호).

다. 주식회사 D은 2019. 12. 30.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, 원고는 C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(광주지방법원 2021. 1. 26. 선고 2020가소560786 판결)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합계 2,19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 그런데도 C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,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를 구하고,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

C은 피고의 외삼촌, E는 피고의 외조모이고, 피고는 약 15년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서 무화과

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한편,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해 이미 2019. 2. 13.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E와 함께 거주하고 있던 상황이었다(이 사건 부동산 바로 옆에는 피고의 부친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다). 그런데 C와 E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, 피고는 E의 거주를 보장하는 한편 자신의 무화과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고, 이에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에게 적정 시세를 문의한 뒤 2019. 6. 14. 매매대금을 적정 시세보다 더 높은 8,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2019. 6. 20.까지 매매대금 8,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다. 이처럼 피고는 자신의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인바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.

3. 판 단

가.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 아닌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75232 판결, 대법원 2018. 4. 10.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).

나. 그런데 피고 제출 각 증거에 의하면,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무화과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고, 이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무화과 농업에 실제로 사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지분만 매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인 E의 지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함께 매수한 점,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이 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도 근저당권, 압류, 가압류 등 C의 채무 상황을 의심케 할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었던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,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.

다. 따라서, 이와 달리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

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하상익

별지